

#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355
----------	------

2018년 3월 7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
- 나. 제출일 : 2018년 2월 6일
- 다. 회부일 : 2018년 2월 9일
- 라. 상정일 : 제27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18년 2월 27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평생교육국장 주용태)

### 1) 제출이유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,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
- 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청소년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) 주요내용

1) 위탁사무명 :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

### 2)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#### 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(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)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(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의 위탁 등)

#### 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구와 매체를 활용한 참여형 성교육 전문기관으로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3) 위탁 사무 내용

-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- 아동·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
- 출장 성교육, 거리상담활동, 학부모 성교육
-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

#### 4)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(창동)
- 시설규모 : 181㎡(1층)
- 주요시설 : 교육관, 강의실, 사무실
- 위치도



5) 민간위탁기간 : 3년(2018. 7. 1~2021. 6. 30.)

6)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
7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170백만원('18년, 국비 74백만원, 시비 96백만원)
- 산출근거 : 인건비 150백만원, 운영비 20백만원

8)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해당사항 없음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‘광운학원’에 위탁 중인 창동성문화센터는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, 공모를 통하여 3년간 (2018.7.1.~ 2021.6.30.) 재위탁하려는 것임.

#### <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개요 >

- 소재지 : 서울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(창동)
- 시설규모 : 181㎡(1층)
- 주요시설 : 교육관, 강의실, 사무실
- 위탁 사무 내용
  -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  - 아동·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
  - 출장 성교육, 거리상담활동, 학부모 성교육
  -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
- 위탁기간 : 3년(2018. 7. 1~2021. 6. 30.)
-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- 소요예산 : 170백만원('18년, 국비 74백만원, 시비 96백만원)

- 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성교육과 상담, 발달 단계별 성교육 프로그램, 출장 성교육, 거리 상담활동, 청소년 성교육관련 자료연구 및 성교육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- 무분별한 성정보, 성문화 등이 여과없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,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, 청소년의 성문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훈련된 전문인력과 운영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.

- 다만, 성문화센터의 종사자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나, 일차적으로 낮은 인건비<sup>1)</sup>로 인한 높은 이직률이 문제<sup>2)</sup>가 되고 있으며, 추가적으로 대체인력 선발시 자격요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「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」<sup>3)</sup>에서 규정하고 있어, 성문화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며, 평생교육국의 처우개선 방안<sup>4)</sup>이 전문성 향상에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위탁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- 창동성문화센터는 성과보고서에서 ‘수요자의 평가반영’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담직 배치필요 등이 지적되어, 전문성 문제를 해소하여 민간위탁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마련과 함께 적정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국의 실질적이고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1) 여성가족부는 성문화센터의 인건비를 국비·시비 매칭비율(50:50)에 따라 책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, 성문화센터의 인건비는 타 청소년시설 대비 낮게 책정되고 있음.

2) 2016년 기준 평균이직률 30%,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.

3) 「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」[별표2]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(제15조제2항 관련)

－ 팀원 및 전문 강사

1. 아동학, 청소년학, 여성학, 사회복지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학,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·청소년, 여성,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2.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, 사회복지사,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·청소년, 여성,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비고 : 지역의 사정으로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4) 매년 3%의 인건비 인상, 연봉제 직원에게 1인당 10만원 내 처우개선 수당을 편성·지급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6명, 전원찬성).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35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2월 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,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
- 나. 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청소년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(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)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(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의 위탁 등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구와 매체를 활용한 참여형 성교육 전문기관으로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- 아동·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
- 출장 성교육, 거리상담활동, 학부모 성교육
- 기타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 연구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소재지 : 서울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(창동)
- 시설규모 : 181㎡(1층)
- 주요시설 : 교육관, 강의실, 사무실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: 3년(2018. 7. 1~2021. 6. 30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: 재위탁 공모

## 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170백만원('18년, 국비 74백만원, 시비 96백만원)
- 산출근거 : 인건비 150백만원, 운영비 20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: 해당사항 없음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: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(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(이하 "성교육 전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(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의 위탁 등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(이하 “성교육 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·운영하는 단체
2.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·운영하는 단체
3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,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,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
4.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선지현 (☎2133-4130)

#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

## □ 민간위탁 개요

### ○ 추진근거
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(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)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(아동·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의 위탁 등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### ○ 사업내용 :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

- 소재지 : 서울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(창동)
- 시설규모 : 181㎡(1층)
- 주요시설 : 교육관, 강의실, 사무실
- 주요사업 : 아동·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, 유치원, 각급 학교, 청소년시설 등 출장 성교육, 성교육관련 조사·연구 등
- '18년예산 : 170백만원

### ○ 추진경과

- 1차 : 2006. 4. 20.~2008. 7. 26.(2년, (학)광운학원 광운대학교)
- 2차 : 2008. 7. 27.~2011. 6. 30.(3년, (학)광운학원 광운대학교)
- 3차 : 2011. 7. 1.~ 2013. 6. 30.(3차, (학)광운학원 광운대학교)
- 4차 : 2013. 7. 1.~ 2016. 6. 30.(3년, (학)광운학원 광운대학교)
- 5차 : 2016. 7. 1.~ 2018. 6. 30.(2년, (학)광운학원 광운대학교)

## □ 성과평가 개요

- 수행기관 :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(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)
- 평가기간 : 2017. 1 ~ 10월
- 대상기관 : 시립청소년시설 53개소(3개 그룹으로 편성)
- 평가방법 :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

## □ 평가결과

### ○ 평가결과 요약

운영 및 관리 (16)	청소년 프로그램 (12)	인사 및 조직 (18)	시설환경 및 안전 (8)	대외협력 및 홍보 (11)	발전 노력 (5)	특화 사업 운영 (20)	우수 사례 (10)	합계 (100)
14.4	12	18	8	11	5	20	9.3	97.7

### ○ 세부 내용

평가영역	평가항목	평가지표	평가 배점	평가 점수
1. 운영 및 관리	1.1. 기관 운영계획	1.1.1. 기관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계획	4	4
		1.1.2. 운영위원회 체계 및 활동	4	4
	1.2. 기관운영 및 관리	1.2.1. 청소년사업비 집행 비율	4	2.4
		1.2.2. 컨설팅 및 평가 개선사항에 대한 사업추진실적	4	4
2. 청소년 프로그램	2.1.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	2.1.1.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	4	4
		2.1.2. 프로그램 수행과정	4	4
		2.1.3. 프로그램 평가	4	4
3. 인사 및 조직	3.1. 청소년지도사 확보	3.1.1. 청소년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 수준	4	4
	3.2. 직원교육 및 복리후생	3.2.1. 직원 1인당 직무연수 참여 시간	5	5
		3.2.2. 직원 안전 교육	4	4
		3.2.3. 직원복리후생제도 운영의 적절성	5	5
4. 시설환경 및 안전	4.1. 시설환경 및 안전	4.1.1. 시설환경의 쾌적성	4	4
		4.1.2. 시설 안전관리의 적절성	4	4
5. 대외협력 및 홍보	5.1. 대외협력 및 홍보	5.1.1. 대외협력 및 연계정도	6	6
		5.1.2. 홍보활동의 노력 수준	5	5
6. 발전노력	6.1. 발전노력	6.1.1. 전반적 발전노력	5	5

평가영역	평가항목	평가지표	평가 배점	평가 점수
7.특화사업	7.1.1	청소년성교육 프로그램	5	5
	7.1.2	성교육서비스의 충실성	5	5
	7.1.3	특화프로그램 차별성과 참신성	5	5
	7.1.4	개인정보관리 보안유지 수준	5	5
우수사례			10	9.3
총점				97.7

## □ 평가결과보고서

평가영역	평가결과
1. 운영 및 관리	○ 수요조사(요구조사, 실태조사)와 구체화된(직원과 프로그램수혜자) 평가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계획서의 작성이 필요함
2. 청소년 프로그램	○ 인력의 전문성 확보에서 상담직의 배치를 고민할 필요있음 ○ 만족도조사나 의견조사보다는 과학적인 수혜자 평가도구 사용이 필요함
3. 인사 및 조직	-
4. 시설환경 및 안전	○ 주변 환경이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나 자동차가 자유로이 다니는 곳에 입구가 있어 위험할 수 있음 ○ 5층건물에 승강기 1대로 운행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
5. 대외협력 및 홍보	-
6. 발전 노력	-
7. 연계 및 지원협력	○ 장애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특화사업으로 활발히 진행함

## □ 민간위탁사업 향후계획

- **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협약 체결**
  - 시의회 동의를 득한 후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'18.6월말까지 재위탁 협약 체결
- **성과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 개선방안 모색**
  - 성과평가 결과 환류 및 미흡한 분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
  -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개선방안 모색 및 실행